
2025년 제3분기

예비비사용 및 전용보고

2025. 9.

균형발전본부

‘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’ 사업의 공기연장 추가 간접비 지급 소송의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공사대금 지급소송 개요

- 사건번호 : 2023가합59788 공사대금 (관할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)
- 당사자 : 원고 신00000000000 외 3 / 피고 서울특별시
- 사건개요
 - (배경) '20. 12월말 최초 계약 이후 네 차례 공기연장으로 간접비 추가 발생
 - (쟁점) 1~4차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간접비 市 부담 여부
 - (판결) 1, 2차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의 市 부담 인정 (항소 포기)

<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>

- ◎ 사업내용 : 판석 포장, 수목 식재, 수경시설 설치 등
- ◎ 총사업비 : 665억 원 ※ 공사도급비: 239억 원
- ◎ 공사기간 ※ 당초 대비 총 275일 증가
 - 당 초 : 2021. 1. 8. ~ 2022. 2. 28.(417일)
 - 최 종 : 2021. 1. 8. ~ 2022. 11. 30.(692일)

□ 예비비 승인 및 집행내역

- 승인금액 : 금1,048,989천원 (금일십억사천팔백구십팔만구천원)
- 세부내역
 - (배상금등) ‘광화문광장 조성사업’ 간접비 추가지급 판결금 지급
- 집행내역 : 원고들에게 총 금1,048,988,970원 지급 완료('25.6.23.)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현액	승인액		집행금액	집행잔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(△)		
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 (도시개발)	예비비 (도시개발)	일반예비비 (801-01)	4,127,394	-	△1,048,989	1,048,989	3,078,405
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	시민중심 대표공간 조성	광화문 시민광장 조성	배상금등 (305-01)	-	1,048,989	-	1,048,989	- (30원)

□ 참고사항

- 제안근거 : 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
 -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‘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’ 핵심 가치의 대시민 홍보물 제작 및 송출 비용 마련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그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홍보물 제작 개요

- 제작목적 : ‘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’ 핵심 가치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송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함
- 제작대상 : 다큐멘터리 1편(45분), 옥외광고용 영상 1편(20초 이내)

□ 예산전용 내역

- 전용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5조
- 사유 : 「정부광고법」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송출 비용 부담을 위한 비목변경
(사무관리비→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)

< 참고 사항 >

「정부광고법」

제8조(소요경비지출)

-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정부광고 업무의 위탁)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「정부광고법 시행령」

제6조(업무의 위탁)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.

- 집행내역(안) : 다큐멘터리 제작 등(150백만원), 옥외광고 제작 및 송출(50백만원)
- 집행 방법 :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방송 및 옥외광고 의뢰(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)

○ 전용금액 : 금200,000천원(금이억원)

○ 전용내역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현액	승인액		전용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(△)	
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	도시환경 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(도시개발)	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	일반 운영비	사무관리비 (201-01)	738,000	-	△200,000	538,000
			자치단체등 이전	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(308-13)	1,617,923	200,000	-	1,817,923

□ 참고사항

○ 제안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 제1항제3항

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2제3항

·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○ 예산조치

- 2025. 8월 6일 : 예산 전용 요구서 송부 (도시정비과 → 예산담당관)

○ 향후일정

- 2025. 8 ~ 9월 : 정부광고 의뢰 (市 → 한국언론진흥재단)

- 2025. 9 ~ 12월 : 옥외광고 송출

- 2025. 10월중 : 다큐멘터리 방영 예정